

## V. 結 論

현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생산물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신체적장해와 재산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嚴格責任法理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를 기하고 있다. 미국은 1963년에 최초로 嚴格責任法理를 근간으로 하는 生産物賠償責任法을 施行하고 있으며 세계주요국의 법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1987년에 제정된 EC의 생산물책임지침에 의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5년 7월부터 嚴格責任法理를 채택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아래 우리나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물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해 缺陷有無와 사고와 결함과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물책임은 제조자의 다른 경영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생산물책임리스크에 대해 제조업자 등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수출제품에 대하여 바이어나 중개상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부보를 하고 있으며 이것도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에 제한되어 있어 연간보험료 94억원, 가입율 0.7%(제조업체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보아도 생산물보험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입법화를 보험제도상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는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생산물책임법이 입법화되면 생산물책임부담자의 범위는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주문자생산자 등 제품에 관여한 대부분의 者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수요의 잠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收入保險料는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화시키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과제가 있다.

첫째,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점은 保險料率體系의 確立이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요율체계 개선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재보험자 구독요율로 존속시켜 놓았으나 향후 再保險去來의 自由化, 保險價格 自由化가 완료된다면 독자적인 요율체계가 없는 국내원보험사의 경쟁력 약화는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와 재보험사, 보험개발원이 협력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요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험개발원 비산정대상종목의 통계자료 집적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증가에 더불어 계약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비부담측면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은 中小企業用 生産物保險의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품질 인증마크 부착제품 등의 인증기관을 통한 보험가입방법 개선과 적절한 상품의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보험사의 적정한 準備金 積立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1985년 보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long tail인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부적절한 준비금 적립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손해보험의 준비금적립방식에 있어서 생산물배상책임을 위시한 long tail종목에 대하여는 보험종목의 특성에 맞게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를 별도로 제고해야 된다.

넷째, 再保險去來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994년도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특종보험은 다른 종목보다 출재비율이 높고, 재보험 총수지차도 853억 적자로 손해보험전체 적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7년에 이루어질 재보험거래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재보험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보험금 회수불능리스크의 경감, 재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팅의 專門化이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담보지역의 법적·사회적 환경을 모르고는 보험을 판매하기 힘들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보험사들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미개척분야에 대한 언더라이팅 능력을 보험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험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